

의안번호	제 720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
설치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박병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(박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발 의 자 : 박병진, 임순목, 이광진,
강현삼, 김봉희, 장선배,
박한범

1. 제안이유

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물을 정함(안 제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바이오환경국 수질관리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7. 9. 21. ~ '17. 9. 2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수원보호구역”이란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허가 대상 건축물 등) ① 「상수원관리규칙」 (이하 “관리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.

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서관을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[수도법]

제7조 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 ① <생략>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<생략>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·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건축물,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·전·용도변경 또는 제거

2. 입목(立木)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

3. 토지의 굴착·성토(盛土)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, 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수도법 시행령]

제13조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

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
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1.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가.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나.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다.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

라.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

· 재축

마.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·공익시설·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

바.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·철도변의 소음권(騒音圈)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.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.

사.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

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·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

아.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.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.

2. ~ 5. <생 략>

② ~ ③ <생 략>

[상수원관리규칙]

제12조(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)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1. ~ 2. <생 략>

3. 소득기반시설 :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

가. ~ 차. <생 략>

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(축사는 제외한다)로서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와 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.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4. 주민공동이용시설: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

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
가. ~ 사. <생 략>

아.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. 이 경우 보호구역 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5. ~ 8. <생 략>